

Chapter 3 The Legislative Trend for Drafting of Jus Rerem in China

제3장 중국의 물권법 제정 동향

A. 중국의 이념논쟁과 물권법의 제정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개혁·개방을 추진한 결과 연평균 8~10% 가까운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지만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등 양극화 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2억여명의 農民工(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노동자)은 저임금을 받으며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2005년에도 총 8만7천건의 각종 시위가 발생하는 등 극도의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는 강령을 가진 중국은 누구를 위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중국의 신좌파 지식인들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전국인대가 추진중인 물권법 제정안을 비판한 사람은 북경대 법과대학원의 궁센톈(鞏憲田) 교수이다. 그는 2005.8.12일 물권법에 반대하는 공개 서한을 인터넷에 띄워서 물권법 초안이 소련·러시아 민법의 사회주의적 전통 및 개념을 위배하고 자본주의 민법을 받아들이는 등 4가지를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 교수는 물권법을 기초한 전문가들을 향해 “노예처럼 자본주의 민법을 베끼면서 부자의 승용차(富人的汽車)와 거지의 밥을 달라는 지팡이(乞丐要飯的棍子)를 똑같이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¹⁾ 신좌파 지식인으로는 북경대 장웨이잉(張維迎), 저우치런(周其仁), 린이푸(林毅夫) 교수, 인민대학의 양샤오칭(楊曉青) 부교수, 평론가 홍무(紅木), 청화(淸華)대 왕후이(汪暉) 교수, 추이즈위안(崔之元) 교수, 상하이(上海)대 왕샤오밍(王曉明) 교수 등이 꼽히고 있다. 신좌파 지식인들은²⁾ 시장경제가 민주주의와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시장 만능주의가 양극화라는 병폐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³⁾

이에 대해 개혁파⁴⁾는 시장을 더욱 많이 개방화하고,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공산당 지도부에 촉구하면서 더 나아가 서구의 다당제 등 급진적인 성향의 정치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2006년 2월 인민대학에 모여 토론회를

1) The critique's author, Gong Xiantian, a professor at Beijing University Law School, accused the legal experts who wrote the draft of "copying capitalist civil law like slaves," and offering equal protection to "a rich man's car and a beggar man's stick." Most of all, he protested that the proposed law did not state that "socialist property is inviolable," a once sacred legal concept in China; The Newyork Times; Mar 12, 2006; <http://www.nytimes.com/2006/03/12/international/asia/12china>.

2) 신좌파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주의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의 장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전통적인 좌파와 다르다.

3) 김용길, “중국물권법 제정동향에 관한 고찰”, 성균관법학 제18권 제3호, 2006. 239면.

4) 개혁파(자유주의)는 개혁개방과 성장론을 앞세우며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열고 ‘13억 인민’과 ‘당중앙 지도부’의 이름을 내세우며 물권법 지지를 다짐했다.

지난 2001년 국정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처음으로 물권법을 제안했던 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왕샹(王翔), 홍콩 중문대 랑센펑(郎咸平) 교수, 상하이대 주쉐친(朱學勤) 교수, 서남민족대 샤오쉐후이(肖雪慧) 교수, 북경대 인톈(尹田), 허웨이팡(賀衛方), 천밍싱(錢明星), 왕이(王軼) 교수, 칭화(淸華)대 쿤리펑(孫立平) 교수, 중국정법대 양판(楊帆) 교수,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쥐다페이(左大培) 연구원, 국무원발전연구중심 당닝닝(丁寧寧) 사회발전부장,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가오상취안(高尚全) 회장, 저우샤오촨(周小泉) 인민은행장 등 개혁파들은 “개혁개방은 대세이며, 이를 거슬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파는 신좌파가 시장경제의 병폐라고 주장하는 양극화 문제도 권위적인 공산당 정권이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신좌파와 개혁파의 논쟁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혁개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6년 3월 전국인대에서 사유 재산 보호를 둘러싼 물권법 논란이 거세지자 “개혁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못박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양극화 해소라는 대명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2006.10.11일 끝난 중국 공산당 제16기 6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和諧社會)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신좌파 지식인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⁵⁾

B. 중국 물권법의 제정

중국은 그동안 시장경제 체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으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었다.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WTO가입⁶⁾ 및 헌법 개정⁷⁾ 등을 통하여 사유재산의 보호에 대한 불가피성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다가 드디어 全國人民代表大會(이하 “전국인대”라 한다)가 2007년 3월 16일에 물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정부가 탄생된 이래 60여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

중국은 사유재산의 귀속관계를 규율하는 물권에 관한 기본적인 제도 및 법률들이 부족하였으나⁸⁾ 시장경제의 발전에 맞추어 민법통칙,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관리법,

5) 김용길, 전 게논문, 240면.

6)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개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였으나 그 이후 6년동안 高成長-低物價時代를 맞아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 등으로 2006년에는 처음으로 외환보유고 1조달러를 돌파하였고, 2007년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으로 변모하였다.

7) 중국 정부는 2004년 헌법을 수정하면서 개정헌법 제13조에 사유재산보호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는 법률에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과 상속권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였다.

담보법 및 농촌토지도급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어 물권을 규율하였다.

1993년부터 시작된 물권법의 기초작업은 조화(和諧)사회 건설을 주장하는 전국인대가 사유재산을 받아들여 부자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좌파들과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개혁파 사이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었으나 물권법은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물권법은 중국의 민법학계 및 관련기관의 저명한 학자들을 총동원하여 이미 마련된 물권관련 법률을 모두 모으고, 대만 및 마카오 지구의 물권관련 법률을 많이 고려하는 한편, 독일, 일본, 프랑스, 스위스, 이태리 등 대륙법계 국가의 법률들도 참고하고 있다. 특히 담보물권과 관련하여서는 영국법과 미국법도 연구하여 도입하고 있다. 물권법의 제정으로 중국은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권법으로 보호하는 사유재산이 헌법이 정한 사회주의 기본원칙과 어떻게 부합할 지가 향후의 과제이며, 이를 두고 치열한 정치개혁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⁹⁾ 향후에 그 풍향을 진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은 그 체계와 내용면에서 아주 비슷한 물권법을 가지게 되었다. 중국의 소유제 개혁 및 물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에 농가 생산도급제 및 경영도급제를 실시하여 생산성이 극도로 낮은 인민공사를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개인농 체제로 복귀하였으며, 1988년 3월의 제7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는 私營經濟의 발전을 허용하고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인정하는 헌법을 수정하였다. 물권법의 기초작업은 1993년에 시작되었는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상무위)는 이의 제정을 매우 중시하였다.¹⁰⁾

8) 梁慧星, 關於中國民法典編纂(法制研究 第2호, 韓國法制研究院, 2002), 205면

9) 개혁파와 각을 이루고 있는 마빈(馬賓), 친중다(秦仲達) 등 신좌파는 개혁 개방이 능사가 아니라면서 무분별한 개혁개방에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 보호를 담은 물권법은 공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공산당체제를 혼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2007.7.18.

10)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中国法制出版社, 2007), 40면